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83
------	------

제출일자 : 2022. 3. 1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1. 1. 12.개정, '22. 1. 13.시행)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 및 예고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 조문 정비(안 제6조)
- 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9조)
- 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규정 신설(안 제24조)
- 마. 의견제출의 방법과 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통보 절차 등
(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
- 바. 그 밖에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2. 2. 21. ~ 2022. 3. 13.)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9조” 를 “「지방자치법」 제20조” 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는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 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을 “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제1항제4호 중 “의견제출” 을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입법예고내용” 을 “입법예고 내용” 으로, “대하여 직권” 을 “직권” 으로, “입법예고사항” 을 “입법예고 사항” 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에게” 를 “등에” 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을 “제13조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뜻을” 을 “사실을” 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를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주민의 규칙 제정 · 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28조(의견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0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 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검토일자
규칙명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금천구청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는 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p> <p>제5조(조례·규칙심의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p> <p>② (생략)</p> <p>제6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p>	<p>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20조-----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 ----- ----- ----- -----.</p> <p>제4조(입법절차) ----- -----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p> <p>제5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입법예고 대상) <u>구청장</u>----- -----</p>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 법령 등-----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예고문 작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

5. (생략)

② (생략)

제8조(예고방법)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예고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입법예고 내용

----- 직권 -----
-----입법예고 사항-----.

제9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11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

----- . -----

----- 등에 -----
----- .

제1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안건 부의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제1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3조제1항-----

----- . -----

한다.

② (생략)

제16조(전문) ① (생략)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생략)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

제24조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전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실-----

③ (현행과 같음)

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제24조(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신 설>

제2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신 설>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제28조(의견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최민혜
연 락 처	2627 - 1107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 12. 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1.>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시행일: 2022. 7. 12.] 제42조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제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는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조(조례·규칙심의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조례·규칙심의회는 구성, 심의사항 등 세무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등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6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7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22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3조(입법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24조 삭제 <개정 2021.12.31.><삭제 2022.1.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33호, 2022.1.12.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4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삭제한다.